##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4882

발의연월일: 2024. 10. 24.

발 의 자 : 윤준병 · 김성회 · 황명선

허종식 • 박희승 • 박민규

박홍배 • 조계원 • 김윤덕

정동영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 등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농어업인·농어촌과 민간기업 등의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민간기업 등의 자발적인 출연금 등으로 조성하며 그 목표액을 매년 1천억원씩 10년간 총 1조원으로하고 있음.

그러나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설치된 2017년 이후 8년째인 올해까지 조성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2,449억원으로, 조성 완료 시한 2년을 남겨 둔 현재까지 목표액의 2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음. 전체 조성금액 중 공공기관(134곳)이 조성한 기금액은 1,495억원으로 전체 61.0%에 달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민간기업(208곳)은 946억원(38.6%)를 납부한 것에 그치고 있음. 특히 민간기업 중 재계서열 1위인 삼성그룹의 경우 작년 한 해의 매출액은 358조원을 넘었지만, 정작 지난 2017년부터 2018년까지는 출연조차 하지 않았고, 그 이후인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6년간 농어촌상생협력기금으로 출연한 금액은 고작 86억원(0.002%)에 불과했음. 삼성그룹을 비롯해 SK・현대자동차・LG・포스코・롯데・한화・HD현대・GS・농협 등 재계서열 1위~10위까지의 그룹이 같은 기간 출연한 금액 역시 작년 매출액 대비 0.003%인 470억원에 불과함. 이에 농어민들의 희생으로 성장 재벌그룹을 비롯한 민간기업들이 농어민과의 상생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어업상생협력기금의 조성기간 및 조성액을 매년 1천억씩 20년간 2조원으로 상향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 이상의 수혜를 받는 기업들에게 매년 매출액의 0.005% 이상을 출연하도록 노력의무를 부과하며,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이 부족한 경우 정부는 당해연도 조성 목표액에서 출연된 금액을 제한 부족액을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직전 회계연도 관세 징수액의 100분의 1을 기준으로 한다)하도록 함.

또한 재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혜기업 대표 단체 또는 협회는 상생기금 조성을 위한 출연 협조 및 지원 요청 등 촐연활동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조성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제2항·제8항 신설 등).

#### 법률 제 호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 항) 중 "정부"를 "정부와 정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필요한"을 "다음 각 호에 따른 필요한"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 다.

- ② 협정 체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 이상의 수혜를 받는 기업(이하 "수혜기업"이라 한다)은 매년 매출액의 0.005% 이상을 상생기금에 출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여건의 변화 등 대내외적인 상황으로 불가피하게 출연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다.
-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직전 회계연도 관세 징수액의 100분의 1 을 기준으로 한다)
- 2. 수혜기업에게 상생기금 출연 협조 및 지원 요청. 이 경우 정부는 재단에 출연 협조 업무를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⑧ 재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혜기업 대표 단체 또는 협회는 상생기금의 연도별 목표액을 조성하기 위하여 수혜기업별 출연 할 당액을 정하여 출연을 요청할 수 있다.

법률 제14528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중 "제18조의2제4항의"를 "제18조의2제5항의"로, "10년간"을 "20년간"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의2(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제18조의2(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설치 등) ① (생 략)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② 협정 체결에 따라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 이상의
	수혜를 받는 기업(이하 "수혜
	기업"이라 한다)은 매년 매출
	<u>액의 0.005% 이상을 상생기금</u>
	에 출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
	다. 다만, 수출여건의 변화 등
	대내외적인 상황으로 불가피하
	게 출연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다.
② (생략)	<u>③</u> (현행 제2항과 같음)
③ 상생기금은 정부 외의 자가	<u>④</u> <u>정부와 정부</u>
출연하는 현금이나 물품, 그 밖	
의 재산 등으로 조성한다.	
④ 상생기금의 조성액 목표는	<u> </u>
매년 1천억원으로 하고, 상생기	
금 조성액이 부족한 경우 정부	
는 그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	
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그 결	<u>다음 각 호에 따른 필요한</u> -
과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	

산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⑤・⑥ (생 략)

<신 설>

법률 제14528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10년간 효력을 가진다.

-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직전 회계연도 관세 징수액의 100 분의 1을 기준으로 한다)
- 2. 수혜기업에게 상생기금 출연 협조 및 지원 요청. 이 경우 정부는 재단에 출연 협조 업 무를 대신하게 할 수 있다..
- ⑥·⑦ (현행 제5항 및 제6항 과 같음)
- ⑧ 재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수혜기업 대표 단체 또는 협회는 상생기금의 연도별 목 표액을 조성하기 위하여 수혜 기업별 출연 할당액을 정하여 출연을 요청할 수 있다.

법률 제14528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유효기간) 제18조의2제4항 제2조(유효기간) 제18조의2제5항 의-----20년간----.